

의안번호	2201734
의 퇴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4. 8. 12.
추계번호	24C20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등)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3호¹⁾에 따른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음(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²⁾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안 제35조제3항)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급식비용 보조 기준과 지원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 곤란
 - 현행법에 따른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급식지원단가를 결정하고 결식우려³⁾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 보건복지부는 매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발간하고 아동급식 1식당 권장지원단가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급식비용을 보조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지원단가 등을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2018~2024년)의 아동급식 단가 및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는 [표 1]과 같음

3)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표 3] 아동급식 단가 현황: 2018~2024년

(단위: 원/1식)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5,000	5,000	6,000	7,000	7,000	8,000	9,000
부산	4,500	4,500	5,000	6,000	7,000	8,000	9,000
대구	4,000	5,000	5,000	5,000	7,000	8,000	9,000
인천	4,500	4,500	5,000	6,500	7,000	8,000	9,000
광주	4,500	4,500	5,000	6,000	7,000	8,000	9,000
대전	4,000	5,000	6,000	6,000	8,000	8,000	9,000
울산	4,500	4,500	5,500	6,000	7,000	8,000	9,000
세종	4,000	5,000	5,000	5,000	7,000	8,000	9,000
경기	6,000	6,000	6,000	7,000	7,000	8,000	9,000
강원	4,000	5,000	5,000	5,000	6,000	8,000	9,000
충북	4,000	4,000	4,000	5,000	6,000	8,000	9,000
충남	4,500	5,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전북	5,000	5,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전남	4,000	4,500	4,500	5,000	7,000	8,000	9,000
경북	4,000	4,500	4,500	5,000	7,000	8,000	9,000
경남	4,000	4,500	4,500	6,000	6,000	8,000	9,000
제주	5,000	5,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	4,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 단가는 상이하며, 표 안의 아동급식 단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최저 단가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안 제35조제5항) 저소득층 급식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동종합실태 조사와 함께 실시할 경우 별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 중인 ‘아동종합실태조사’(2023년 예산 기준 5억원)에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관련 문항이 추가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35조제6항)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 곤란
 - 개정안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보상금을 지급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보상금액 등을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